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선거운동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150호)

2025.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검토의견	5

【참고】 최근 선거 현수막,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수량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민형배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5. 6. 27.
3. 회부연월일 : 2025. 6.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에 사용된 선전물을 재활용해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합니다.

현재 선전물은 첩부·게시·설치한 사람이 선거일 후 철거하도록 합니다. 이때 철거 후 재활용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 미비로 막대한 양의 선전물이 폐기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는 1천110t, 같은 해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1천557t,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천235t의 현수막이 버려졌습니다.

이에 철거한 선전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구·시·군의 장이 재활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재활용 업무 대행을 맡길 경우, 사회적기업·중소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이 우선적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선거운동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76조제2항 신설 등).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구·시·군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철거된 선전물이나 시설물(이하 “선전물등”이라 함) 중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선전물등을 재활용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이 우선적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76조 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⑥ (생략)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는 이 法에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萬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⑦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u>第276條(選舉日후 宣傳物 등의 撤去)의 規定에 위반하여 宣傳物 등을 철거하지 아니 한 者</u>	6. <u>제276조(선거일후 선전물 등의 철거)제1항의</u> ----- -----
⑧ ~ ⑫ (생략)	⑧ ~ ⑫ (현행과 같음)

第276條(選舉日後 宣傳物 등의 撤去) 選舉運動을 위하여 宣傳物이나 施設物을 첨부·게시 또는 設置한 者는 選舉日後 지체없이 이를 撤去하여야 한다.

<신 설>

第276條(選舉日後 宣傳物 등의 撤去) ① -----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선전물등”이라 한다)을-----
-----.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구·시·군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철거된 선전물등 중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선전물등을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재활용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재활용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 중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 또는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해당 기업이 우선적으로 선전물등의 재활용을 대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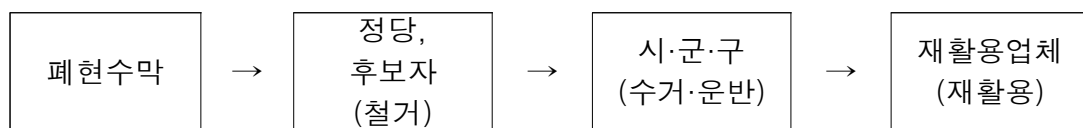
2. 검토의견

현행법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전물등을 첩부·게시 또는 설치한 자는 선거일 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선거운동을 위하여 첩부·게시 또는 설치된 선전물등은 대부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¹⁾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리수거되어 재활용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현수막 재활용 시스템 예시 》



※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2020.4.9.), “현수막 등 총선 선거홍보물 재활용 대책 추진”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양의 선전물등이 대부분 소각되거나 매립되어 심각한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그 규모를 축소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으며(선전물등 현황은 참고자료 참조),

정부는 인쇄물, 현수막 등 선거홍보물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수막 등 총선 선거홍보물 재활용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발표(2020.4.8.)한 바 있음.

《현수막 등 총선 선거홍보물 재활용 대책 추진 주요 내용(2020.4.9.)》

- 목 적: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 선거홍보물 폐기물의 재활용 대책 추진
 - 추진주체: 환경부, 전국 지자체
 - 주요내용
 - ‘선거용 인쇄물 분리배출 및 폐현수막 재활용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
 - <현수막 재활용>
 - 후보자가 현수막을 철거한 후 지자체에 수거 요청 시, 해당 지자체가 이를 지역 재활용업체나 사회적 기업 등에 등에 무상으로 제공
 - 전국의 폐현수막 재활용²⁾ 기업과 사회적 기업 목록을 지자체와 공유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폐현수막 재활용 제품 등을 개발
 - <인쇄물 재활용>
 - 책자형 공보물은 종으로 분리배출하고, 재활용이 안되는 코팅 종이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폐현수막 등 선거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수요처를 적극 발굴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 재편집

2) 업사이클링(또는 업사이클)은 ‘Upgrade + Recycling’의 합성어로, 버려지는 자원에 디자인, 아이디어를 더하거나 활용 방법을 바꿔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으로서 우리말로는 ‘재활용’이라고도 함.

개정안은 철거된 선전물등 중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선전물등을 재활용하도록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구·시·군의 장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재활용 업무 대행 시에는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이 우선적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수막 등 과도한 선전물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책적인 개입의 필요성이 상당하고,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의 육성·지원을 목적으로 개별 법률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보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후 발생하는 폐 선거벽보·선거공보·거리현수막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는 한편, 선전물등의 기준 이외에도 세부 처리 방법·절차 등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편, 제22대 국회에는 선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의 최소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의 법률안이 2건 발의되어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효과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개정안과 함께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임.

《 제22대국회 유사 취지 법률안 》

발의의원	의안번호	제안일자	주요내용
강득구	2204244	2024.9.24.	선거공보물 등에 사용되는 종이를 환경부의 저탄소제품인증과 환경표시인증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GR인증에 의한 재생종이로 한정
김태호	2208050	2025.2.11.	선거벽보 디지털 게시판 설치·운영 및 선거벽보·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문 의 처

02)6788-5342

참고

최근 선거 현수막,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수량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현수막 표지 교부 현황

(단위: 매)

선거명		현수막 표지
제21대 대통령선거		34,267
제22대 국회의원선거		19,701
제20대 대통령선거		66,144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선거	22,109
	구·시·군의 장선거	16,493
	시·도의회의원선거	12,030
	구·시·군의회의원선거	28,761
	교육감선거	21,599
	교육의원선거	142
	소계	101,134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현수막)에 따라 후보자·정당이 현수막을 설치할 때에 해당 현수막에 부착하는 표지 교부 수

2. 선거벽보 제출 현황

(단위: 매)

선거명		제출
제21대 대통령선거		620,70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250,021
제20대 대통령선거		1,256,88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선거	181,800
	구·시·군의 장선거	119,172
	시·도의회의원선거	95,523
	구·시·군의회의원선거	231,016
	교육감선거	162,271
	교육의원선거	690
	소계	790,472

3.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현황

(단위: 매)

선거명		책자형 선거공보	책자형 선거공보 (거소투표용)	전단형 선거공보
제21대 대통령선거		152,606,070	3,766,227	76,340,145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68,645,819	2,154,756	-
	비례대표	242,102,942	1,495,389	-
제20대 대통령선거		335,093,262	12,684,886	98,533,365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시·도지사선거	102,935,087	4,125,583	-
	구·시·군의 장선거	58,718,469	2,273,431	-
	시·도의회의원선거	46,543,045	1,819,395	-
	구·시·군의회의원선거	98,859,732	3,965,208	-
	광역의원비례대표선거	121,020,882	4,505,618	-
	기초의원비례대표선거	46,298,479	1,785,941	-
	교육감선거	82,437,267	2,852,023	-
	교육의원선거	456,920	12,200	-
	소계	557,269,881	21,339,399	-

4.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 현황

(단위: 매)

선거명		제출
제21대 대통령선거		467,670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180,730
	비례대표	1,495,389
제20대 대통령선거		868,829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선거	256,650
	구·시·군의 장선거	153,370
	시·도의회의원선거	43,880
	구·시·군의회의원선거	58,652
	광역의원비례대표선거	304,080
	기초의원비례대표선거	69,310
	교육감선거	230,440
	교육의원선거	1,580
	소계	1,117,962

※ 책자형 선거공보에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삽입한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책자형 선거공보 매수와 중복 산정되었을 수 있음.

5. 선거공약서 배부 현황

(단위: 매)

선거명		일반형	점자형
제21대 대통령선거		150,100	62,105
제20대 대통령선거		8,236,800	356,674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선거	1,011,300	68,432
	구·시·군의 장선거	799,323	2,855
	교육감선거	1,678,945	37,992